



셧티코 Safetyko (주) 셧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 안내

셧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셧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입니다.
이번 달 알리미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개정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주기가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각 사업장 별 안전진단 시기를 확인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1] 부칙 제 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 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래와 같은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21.04.01 이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21.04.01 이후)	안전진단주기
고 위험도	가 위험도	매 4년
중 위험도	나 위험도	매 8년
저 위험도	다 위험도	매 12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

구분	사업장 현황	안전진단주기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면제 사업장	장외영향평가승인+안전진단 시행 한 경우	마지막 안전진단 일부터 12년 주기 시행
	장외영향평가승인+안전진단 미 시행 한 경우	마지막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 받은 시점 에서 해당 위험도 주기 적용 (단 적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위험도 따른 안전진단주기 적용)
	신규사업장	설치일로부터 매 12년 주기 시행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이행대상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대상 (안전진단 시행 경우)	마지막 안전진단 일부터 위험도에 해당하는 주기 적용 시행 (단 재제출로 위험도 변경 시 마지막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주기 적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대상 (안전진단 미 시행 경우)	1) 기존 장외 제출시 >> 장외 안전진단일 기준 시행
		2) 장외 최초적합 후 장외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로 위험도 변경 시 → 적합 통보일 기준 안전진단이 가장먼저 도래하는 시점 실시
		3) 안전진단 시행일 경과 or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년도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차 차년도 내에 실시

산업안전 환경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PSM/이행평가/자체감사/위험성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물인허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플랜트설계, 구매, 공사(EPC)
방폭/산업안전 EPC
전문소방설계 및 공사
산업플랜트
화공/전력 플랜트
원자력/발전플랜트
특수설계&컨설팅

산업안전 환경진단
안전관리대행
산업안전진단
연구실정밀안전진단
사업장 시설물관리
비산배출진단점검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 주식회사 셧티코 |
| 주식회사 셧티코 엔지니어링 |

www.safetyko.co.kr | www.safetyko.com
서울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803~804호 (가산동,IT캐슬) | Tel : 02-6263-7702 | Fax : 02-6263-7703
부산본부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9번길 43 보승빌딩 206호 | Tel : 051-465-7702

3.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이행대상의 안전진단주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발췌
(첨부1. 참조)

1)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장

- 마지막 안전진단 일로부터 위험도에 해당하는 주기 적용
-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년도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차 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Case 1.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로 인해 위험도가 변경(고 → 중)된 경우

: 마지막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위험도(중)에 해당하는 주기 적용

예시1) A사업장이 '16년 장외 적합 (고 위험도) → '20년 안전진단' → '2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적합 (나 위험도)인 경우 안전진단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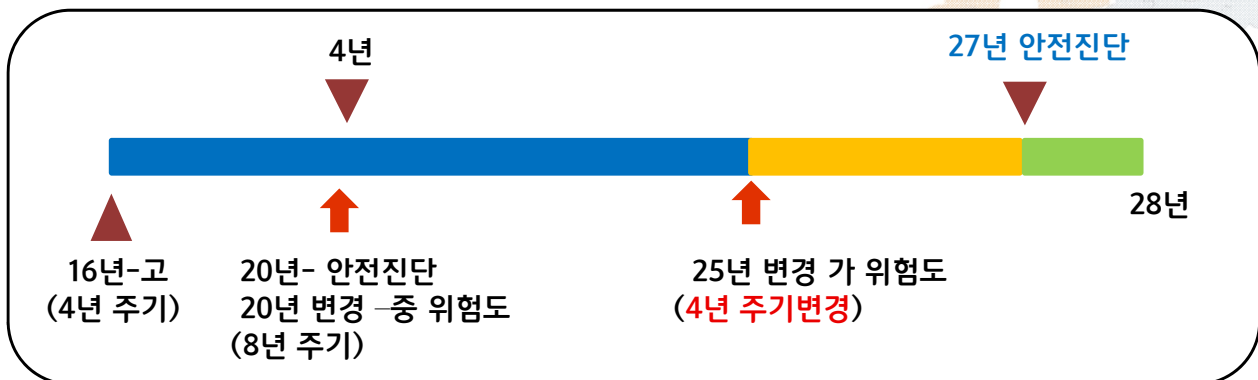
: 마지막 안전진단일인 '20년'도로부터 8년 뒤 '28년'

Case 2.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은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로 인해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

: 마지막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위험도에 해당하는 주기 적용

예시2) B사업장이 '16년 장외적합(고 위험도) → '20년 안전진단' → '20년 장외 재체출 적합(중 위험도) → '25년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적합(가 위험도) 인 경우 안전진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일(25'년)로부터 2년 이내인 27년



마지막 안전진단일로부터 4년(24년)이 이미경과
→ 적합일(25년)로부터 2년 이내(27년) 차기 안전진단 실시

2)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사업장

- 마지막 안전진단 일이 없으므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안전진단 일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후 위험도에 해당하는 주기 적용

case 1.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로 인해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진단 일은?
최초제출 장외영향평가서의 적합통보일로부터 위험도 주기에 따라 도래하는 시점

case 2. 장외영향평가서 최초 적합 후 변경 제출로 인해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의 안전진단 일은?

(최초 안전진단 일)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일로부터 위험도 주기에 따라 안전진단 일이 도래하는 시점을 각각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

(다음 안전진단 일) 변경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 적용

case 3.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로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의 안전진단 일?

(최초 안전진단 일) 장외영향평가서의 안전진단일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진단 일을 각각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

(다음 안전진단 일) 화학사고예방계획서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 적용

3) 하나의 사업장이 위험도가 다양한 여러 단위공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받은 경우

- 21년 4월 1일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단위공장인 경우
→ 마지막 안전진단 일부터 위험도에 해당하는 주기를 적용
- 21년 4월 1일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위공장인 경우
→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안전진단 일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후 위험도에 해당하는 주기를 적용

4) 기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장으로 이후 하위규정 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경우 안전진단

-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주기 적용
(적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날짜로 함)

5) 장외영향평가서를 적합을 받고 변경이 발생할 경우 총괄영향범위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원래의 안전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
- 총괄영향범위 확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 (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년도로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년도로부터 차 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4.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컨설팅 강점

- (1) 300여건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승인 실적
- (2) 각종 인허가 진행에 따른 사업장 맞춤형 경제 설계
- (3)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법 통합 인허가 컨설팅
- (4) 자체 검수팀 운영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프로세스 체계화

☎ 02-6263-7702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 환경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PSM/이행평가/자체감사/위험성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물인허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플랜트설계, 구매, 공사(EPC)

방폭/산업안전 EPC
전문소방설계 및 공사
산업플랜트
화공/전력 플랜트
원자력/발전플랜트
특수설계&컨설팅

산업안전 환경진단

안전관리대행
산업안전진단
연구실정밀안전진단
사업장 시설물관리
비산배출진단점검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 주식회사 셉티코 |

| 주식회사 셉티코 엔지니어링 |

www.safetyko.co.kr | www.safetyko.com

서울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803~804호 (가산동,IT캐슬) | Tel : 02-6263-7702 | Fax : 02-6263-7703

부산본부 : 부산시 중구 중창대로 9번길 43 보송빌딩 206호 | Tel : 051-465-7702